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목 차>

1.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등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이름	이영은
	담당부서 (과)	식량산업과		직급	주무관
	국장	박수진		연락처	044-201-1836
	과장	송지숙		이메일	dollyne@mail.go.kr

식량정책관

박수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등			
	2.규제조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1			
	3.위임법령	밀산업 육성법 제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1.16.~1.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밀은 품종, 단백질 함량 등에 따라 사용용도가 달라지는 등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별도 지원 및 전문교육과정 등의 사향이 미미한 상황 특히, 국산밀이 수입밀 대비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실제 소비도 정체됨에 따라 민간의 재고가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주기적으로 발생 이에, 법에서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밀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적정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7.규제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			
	8.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연구기관, 밀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밀산업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 밀산업 종사자 중 전문가 양성 등으로 밀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78.06	0	78.06
	11.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u>별표 2</u>와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밀은 품종, 단백질 함량 등에 따라 사용용도가 달라지는 등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별도 지원 및 전문교육과정 등의 사항이 미미한 상황
 - 특히, 국산밀이 수입밀 대비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실제 소비도 정체됨에 따라 민간의 재고가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주기적*으로 발생
- * '12~'13년 과잉생산된 밀 3만톤 주정용 처분, '16년산 재고밀 1만톤 주정용 처분, '19년 재고밀('17, '18년산) 1만톤 정부비축
- 이에, 법에서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밀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적정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신설)	해당없음(신설)
규제대안1	교육훈련기관 지정 시 적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기관 평가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음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기관 지정 한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산밀산업협회	의견없음	
우리밀생산자회	고품질 밀생산을 위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필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밀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일정 기준(시설, 장비, 강사, 교육과정 등)을 갖추는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마련 필요

3. 규제목표

-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하여 밀산업 육성을 위한 적정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에서 밀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적정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 대상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 체에 대해서만 제한적 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 체에 대해서만 제한적 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 체에 대해서만 제한적 적용
사후 평가관리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 체에 대해서만 제한적 적용
규제 샌드박스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 체에 대해서만 제한적 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34.44		34.44
정부		43.62		43.62
총 합계		78.06		78.06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인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은 시설, 장비, 인력 등 지정기준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인력·시설 등이 적을 것으로 판단
- 지정요건을 적용하더라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준수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산하기관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으로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추가 행정 소요 미발생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기준 확인 및 관리업무는 행정적인 절차가 주된 업무로 추가적 재정소요 미발생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밀산업 육성법 제정('19.8.27.)
-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부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9~11월)
- 내부안 확정 및 입법예고 추진('19.11~12월)

2. 향후 평가계획

- 교육훈련기관 지정·운영결과에 따라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지정요건 개선·보완

3. 종합결론

- 밀산업 육성을 위한 적정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필요
- 업무위탁 기관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밀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34.44		34.44
정부		43.62		43.62
총 합계		78.06		78.06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정부 :

□ 비용

(정량)세분류	교육훈련기관
활동제목	인건비·임차료·강사료 등 운영비
비용항목	운영
비용	9,181,70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 인건비: 연간 투입인원(2) × 연간 투입시간(0) × 시간당 근로임금(0) × 피규제자수(1) - 운영비: 구매·임대비용(0) × 연간 구입횟수(0) × 피규제자수(1) - 강사비: 연간 투입인원(1) × 연간 투입시간(80) × 시간당 근로임금(19,936) × 피규제자수(1) - 교재제작비: 구매비용(8백만원) × 연간 제작횟수(1) × 피규제자수(1)
근거설명	○ 현재 밀산업 종사자 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교육훈련기관 지정 시 별도 고용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없음 ○ 농진청은 국가기관으로 교육장소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시설 사용에 대한 별도 비용 발생 없음 ○ 밀 생산농업인 평균 8천명으로 연간 10%씩 교육에 참여할 경우, 강사 1인당 400명 담당 - 담당공무원이 강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외부 위촉강사는 1명으로 가정 - 투입시간은 1회 교육과정을 8시간, 1회 교육참석인원 40명으로 운영할 경우 1인당 연간 투입시간은 80시간 ○ 시간당 근로임금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력 5년의 경우 국립대학 조교수로 가정하여 '18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 15호봉(3,189,700원)을 기준 - 시간당 근로임금은 월급여/(40시간×4주) 3,189,700/(40×4)

	○ 교재 제작비 1부당 10,000원 × 800부 = 8,000,000
--	---

(정량)세분류	교육훈련기관
활동제목	교육비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34,449,76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 1인당 1회 교육비(45,000원) × 연간 교육생 수(800) = 36,000,000원
근거설명	- 타 행정규칙 교육비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교육비 정규과정 (3일, 20시간) 115,000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집합교육) 45,000원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정량)세분류	
활동제목	교육비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34,449,76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 1인당 1회 교육비(45,000원) × 연간 교육생 수(800) = 36,000,000원
근거설명	- 타 행정규칙 교육비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교육비 정규과정 (3일, 20시간) 115,000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집합교육) 45,000원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		
	2.규제조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별표2		
	3.위임법령	밀산업 육성법 제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1.16.~1.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밀은 품종, 단백질 함량 등에 따라 사용용도가 달라지는 등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별도 지원 및 전문교육과정 등의 사항이 미미한 상황 특히, 국산밀이 수입밀 대비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실제 소비도 정체됨에 따라 민간의 재고가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주기적으로 발생 이에, 법에서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밀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적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7.규제내용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지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별표2)으로 마련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		
	9.규제목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의 충실한 운영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밀은 품종, 단백질 함량 등에 따라 사용용도가 달라지는 등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별도 지원 및 전문교육과정 등의 사항이 미미한 상황
- 특히, 국산밀이 수입밀 대비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실제 소비도 정체됨에 따라 민간의 재고가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주기적*으로 발생
- * '12~'13년 과잉생산된 밀 3만톤 주정용 처분, '16년산 재고밀 1만톤 주정용 처분, '19년 재고밀('17, '18년산) 1만톤 정부비축
- 이에, 법에서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밀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적정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지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별표2)으로 마련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산밀산업협회	의견없음	
우리밀생산자회	의견없음	

3. 규제 목표

-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사후관리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에서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 대상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제한적 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제한적 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제한적 적용
사후 평가관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제한적 적용
규제 샌드박스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제한적 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인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은 시설, 장비, 인력 등 지정기준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인력·시설 등이 적을 것으로 판단
-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교육훈련기관을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추가 행정 소요 미발생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기준 확인 및 관리 업무는 행정적인 절차가 주된 업무로 추가적 재정소요 미발생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밀산업 육성법 제정('19.8.27.)
-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부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9~11월)
- 내부안 확정 및 입법예고 추진('19.11~12월)

2. 향후 평가계획

- 교육훈련기관 지정·운영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3. 종합결론

- 밀산업 육성을 위한 적정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필요
- 업무위탁 기관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